

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가이드북

1. 2023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모집

1)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모집 기간

구분	계절학기(하계,동계)		정규학기(2학기)	
	하계	동계	1학기	2학기
접수기간	5.1(월) ~ 6.2(금)	11.1(수)~11.30(목)	12.1(금) ~ 1.31(수)	24.5.13(월) ~ 5.31(금)
접수방법	https://coop.hongik.ac.kr 로 로그인(클래스넷 ID와 PW 사용, 단 ID는 대문자)			

※ 추후 자세한 모집일정 등은 진행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인.

2)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

-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(단, 계절학기의 경우 휴학생도 참여 가능하나 특별 장학금 미지급)
- 주전공, 복수전공, 융합전공생
단, 정규학기 초과학기자 및 졸업유예자(학사학위 취득유예자 혹은 예정자)의 경우 사전 문의 후 신청

3)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혜택

- 실습기관에서 1개월 당 최저시급의 75%이상 지급
- 실습종료 후 평가를 통해 특별장학금 지급
- 현장실습을 통한 진로설정 및 커리어 개발, 미래 산업 통찰력 함양,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 경쟁력 향상,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폭넓은 관점 습득



2. 2023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 주요 변경 사항

- 2023년 2학기부터 정규학기 장기현장실습학기제(4개월) 실시.
 - 이수학점 : 기존 1개월당 1학점에서 **3학점**으로 확대 시행
(계절학기 6학점, 정규학기 12학점. 최대 18학점까지 가능)
 - 이수구분 : **일반선택 또는 전공선택**
 - 등록금 납부 : 정규학기 **등록금 납부자**에 한하여 참여 가능
 - 특별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: 최소 **실 출근일수 20일 이상** 현장실습 참여자에 한하여 **1일당 2만원씩 지급**
 - 계절학기(단기) 현장실습은 **일반선택으로 6학점**까지 취득 가능하며, **정규학기(장기) 현장실습은 전공선택/일반선택으로 12학점**까지 취득 가능
- 단, 이수 구분은 실습직무와 전공 연관성을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하며, 전공선택은 최대 9학점까지만 가능
- 재학 중 **최대 18학점**까지 가능하며, 계절학기(단기) 현장실습 및 정규학기(장기) 현장실습은 각각 **1회씩만** 참여 가능(2023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부터 적용)
- 단, IPP 장기현장실습 참여자는 계절학기(단기) 현장실습 1회만 참여 가능
- **자율전공(캠퍼스, 단과대학) 학생 참여 불가**: 주전공으로 진입 후 참여가능

3. 본교 현장실습운영관련 주요 내용

1) 현장실습 운영 기준

주 5일 (1일 8시간, 1주 총 40시간)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실습가능한 업체로 사전점검서를 통한 확인 및 운영계획서 검토를 통한 적합성이 판정된 업체여야 함

- 1) 주 40시간(1일 8시간 기준) 기준 전일제로 1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운영함.
- 2) 센터와 학생의 사전 동의를 받아 1주에 최대 5시간 연장실습 가능하나 연장근무수당을 필수로 지급(당해 연도 시간 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150이상) 단, 주말·공휴일 근무 불가, 연장근무수당을 대체휴무형식으로 지급불가
- 3) 22시 ~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실습 불가

2) 실습기관 참여 및 적격 기준

현장실습 참여 불가 기관	- 실습기관 내에서 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* 프로젝트성 과제를 수행하며 학내 동아리방, 강의실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- 4대보험 체납 사업장 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-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-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,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- 소비, 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등 - 계절적, 일시적 인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단단계 판매업체 등 - 학생이 소속된 대학 및 산학협력단 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실습이 어려운 사업장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※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서작성(별지1호) 및 운영

※ 학생 보건, 위생, 안전 보장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시설, 설비 등이 갖춰진 환경 조성 필요.

특히 **기존참여 실습기관도 실습환경 검토 등을 통해 미흡할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불가.**

3)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확인 및 수강신청원 제출

실습기관에서 제시한 운영계획서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자신의 전공관련성을 검토한 후 졸업학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함. 특히 수강신청원 제출 시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과(부)장의 날인을 받아 센터로 제출

4) 실습기관 교육시간 배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

4-1. 교육시간 배정 운영

- 가.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가 본인의 업무(시간) 중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투입하는 직무 관련 교육 측면의 시간을 의미
- 나. 실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, 실무수행 과정에 대한 중간점검 및 피드백, 수행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, 기타 필요 또는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교육 및 지도 등이 이에 해당되며, 현장실습 담당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함

4-2. 실습지원비 지급 계산 방법

- 가. 실습지원비의 경우 학생의 계좌로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.
- 나.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(식사, 기숙사, 통근버스 등)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되지 않으며,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 지급 불가

- 다. 직무교육시간은 실습 직무 별 특성에 따라 전체 실습기간의 10%이상 25%이내로 운영(직무교육시간에 따라 1개월당 지원되는 실습지원비가 달라짐. 단, 최소 75%이상 지급되어야 함) ex) 최소 1일 8시간,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주당 총 4시간(10%)에서 10시간(25%) 수준의 시간이 필요함.
- 라. 실습지원비 계산 방법: 2024년 최저시급 9,86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월 최저 임금의 75%(155만원) 이상을 지급 해야함.
- 마. 지급시기: 당월 또는 익월 중 지급하되 실습일자 등 세부사항은 실습기간 내규에 따름

5) 학교-실습기관-학생 3자간 협약서 체결

1.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최종선발이 완료되면 제3자 간 협약서 체결 진행
① 실습기관 날인(전자직인등록), ② 학생날인(전자서명), ③ 현장실습지원센터(학교직인등록)
2. 반드시 실습 전에 체결되어야 함 (실습 시작 후 체결 불가)

6) 전공관련성으로 실습 운영 및 학생선발(추천)

현장실습학기제의 전반적인 과정은 일반적인 인력 채용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며, 실습기관에서는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(학교 방문 면접, 비대면 화상면접, 실습기관 방문 면접 등 여건에 맞게 실시)

7) 산재보험 가입(필수, 산재보험 미가입시 현장실습 불가)

1. 고용노동부 소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에 따른 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9호, 2018.09.11. 시행)에 의거하여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(필수)
2. 학생 선발이 완료되면 실습시작 전에 가입하여, 실습시작 후 7일 이내로 관련 증명서 온라인 시스템에 탑재해야 함.

8) 유급휴일 규정 준수

1.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 4항 및 제 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.
 - 가.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
 - 나.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, 사망 등의 경조사일 경우
 - 다.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. 다만,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, 학생,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
2. 1개월 이상 현장실습 진행 시 1개월은 유급휴일 1일, 2개월은 유급휴일 2일 보장

9) 기타 실습기관 주의사항

1. 교육 및 지도 :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이나, 지도, 피드백 등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여 학생이 해당 실습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, 전담자를 배정하여 직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
2. 직무수행 기회의 제공 : 업무의 난이도, 전문성, 기밀사항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향후 동종 업계에 종사할 미래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학생입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수행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
3. 운영계획의 임의 변경 금지 : 실습기관 또는 학생으로 인한 운영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변경 필요성과 방법, 범위를 확정하고 참여 학생의 동의 하에 변경하여야 함
4. 학생 출석 및 평가사항 엄격 관리 : 학생들의 출석여부 매일 확인 및 관리 필요 (반드시 현장실습 담당지도자와 함께 실습이 이루어져야 함.)
5. 실습기관과의 협력 : 학교와 주기적인 연락을 통해 업무협의를 진행하며, 신규실습기관의 경우 사전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필요. 현장실습 운영 중 학생들 중간점검지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필요
6. 근로기준법 준수 및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현장실습분위기 조성
 -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인 동시에 실습기관에서 직무교육 및 실습을 하는 근로자임.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지도함.
 - 최근 성평등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로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었음. 이에 실습기관에서 실습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실습기관 구성원이 사전에 숙지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유 필요.
7. 근로계약 체결 해야 할 경우
 - 현장실습생이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진행해야 하며 100% 실습지원비 지급.

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 지표

실습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착안사항(예시)

- 일반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(실습)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
- 일반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 또는 보조하는 경우(특히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참여하는 경우)
- 작업 및 근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
- 보수와 성격(근로의 대가인지 여부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4. 2023년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일정 및 절차

계절학기(하계)

기업참여신청 및 공고게시	23.4.27(목) ~ 6.2(금)	
지원자 모집 및 지원서 접수	23.5.1(월) ~ 6.2(금)	수강 신청 일정을 고려하여 지원/선발 기간 엄수
선발합격자 최종 선발완료	23.6.7(수)	
학점인정신청서 제출(학생)	~ 23.6.7(수)	최종 합격생에 한함
실습 기간	23.6.26(월)~8.31(목)	

2023년도 정규학기(2학기)

기업참여신청 및 공고게시	23.7.1(월) ~ 7.19(금)	
지원자 모집 및 지원서 접수	23.7.20(월) ~ 8.4(금)	수강 신청 일정을 고려하여 지원/선발 기간 엄수
선발합격자 최종 선발완료	23.8.9(수)	
수강신청원 제출(학생)	~23.8.9(수)	최종 합격생에 한함
수강신청 기간	23. 8.23(수)~8.28(월)	
2학기 등록 및 휴학신청(예정)	23.8.24(목)~8.30(수)	
수강신청 정정	23.9.1(금)~9.7(목)	
실습 기간	23.9.1(금)~12.29(금)	16주 기준 12.22(금)까지 운영 가능
정규학기 성적처리 기간	1월 중	정규 학사일정: 23.12.14(목)~24.1.4(목)

계절학기(동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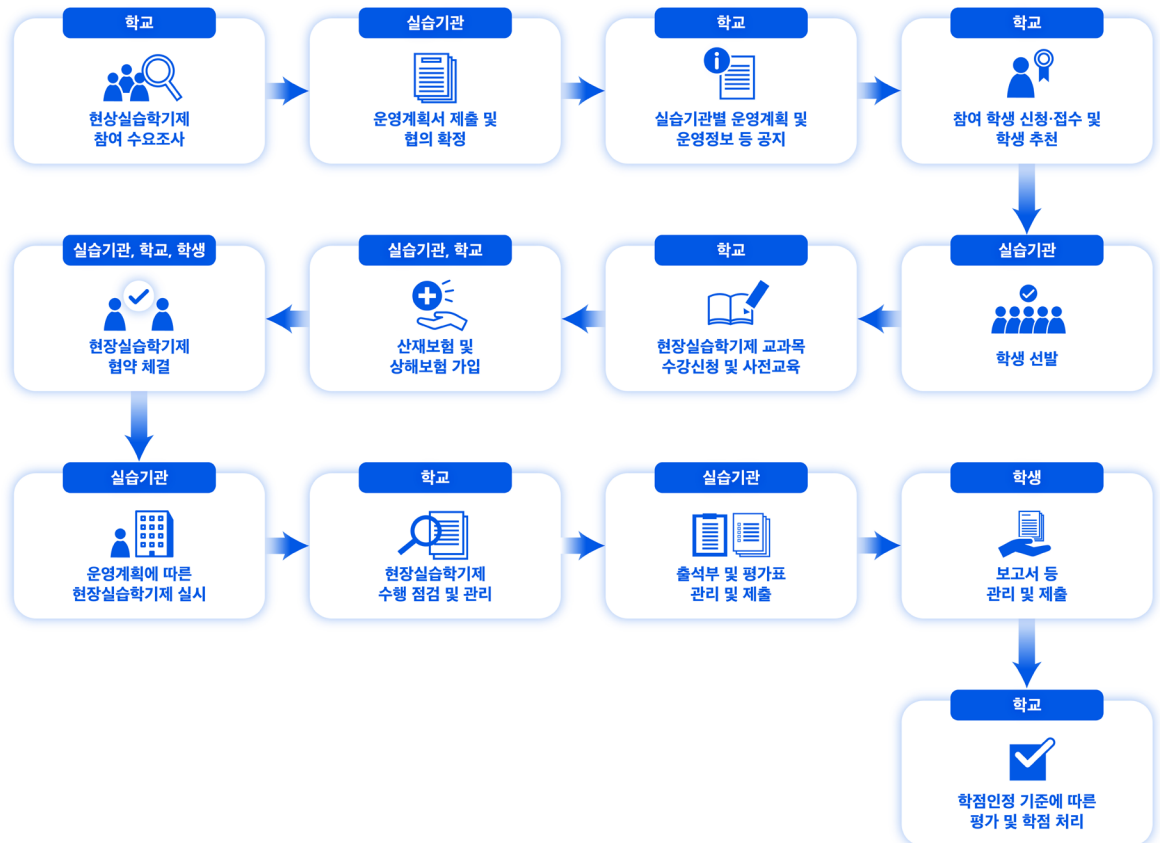
기업참여신청 및 공고게시	23.10.18(수) ~11.24(금)	
지원자 모집 및 지원서 접수	23.11.1(수) ~ 11.30(목)	수강 신청 일정을 고려하여 지원/선발 기간 엄수
선발합격자 최종 선발완료	23.12.6(수)	
학점인정신청서 제출(학생)	~ 23. 12.6(수)	최종 합격생에 한함
실습 기간	23.12.25(월)~24.2.29(목)	

2024년도 정규학기(1학기)

기업참여신청 및 공고게시	2023.11.17.(금) ~ 11.30(목)	
지원자 모집 및 지원서 접수	2023.12.1.(금) ~ 2024.1.31(수)	수강 신청 일정을 고려하여 지원/선발 기간 엄수
선발합격자 최종 선발완료	2024. 2.7(수)	
수강신청원 제출(학생)	~2024. 2.7(수)	최종 합격생에 한함
2학기 등록 및 휴학신청(예정)	2024.2.22.(목)~2.28(수)	
수강신청 기간	2024. 2.23(금) ~ 2.28(수)	
실습 기간	2024.3.1.(금) ~ 6.28(금)	
정규학기 성적처리 기간	7월 중	

1)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절차

- ①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공지 확인
- ② 실습기관 등록 및 사전현장점검(※ 신규 및 위험물 취급 업종 등)
- ③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작성, 내용검토 후 확정공고 및 안내
- ④ 지원서 작성 및 제출(이력서, 자기소개서,서약서)
- ⑤ 서류심사 및 면접
- ⑥ 선발확정 및 실습기관 등 3자협약서(실습기관->학생->현장실습지원센터) 체결
- ⑦ 사전직무교육이수(성폭력예방교육,안전교육,직장예절교육,현장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)
- ⑧ 수강신청(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처리)
- ⑨ 현장실습 시행
- ⑩ 현장실습 중간점검
- ⑪ 보고서 제출 및 학점인정처리(종료 후 일괄처리, 최종 확정 전까지는 성적표 F로 표기)
- ⑫ 활동결과에 따라 특별장학금지급



2) 단계별 참여 내용

	센터	학생	실습기관
현장실습 시작 전	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행 공고	전공관련 실습기관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제출	실습기관등록(신규) 운영계획서 제출
	설명회 개최(관심학생)	해당 실습기관 면접	지원 학생 면접 및 선발
	오리엔테이션 실시 수강신청	오리엔테이션 및 사전직무교육이수 참여	온라인 제3자 협약서 체결
	상해보험 가입	등록금 납부	
현장실습 시작 후	온라인 현장실습 중간점검 설문 실시	현장실습 네이버밴드에서 공지사항 확인	산재보험가입 증명서 탑재
	현장방문 중간점검 실시	온라인 현장실습 중간점검 설문 응답	중간점검 협조
	학생 출결 사항 등 확인	애로사항 등 센터와 공유	출근부 체크 및 확인
현장실습 종료 후	학생 실습보고서 제출기간 운영	실습보고서 및 학점인정원 제출	학생 출근부 최종확인 및 실습보고서 평가
	학점인정처리	실습비지급내역 온라인 탑재	실습기관 지도담당자 지도비 지급 관련 서류 및 학생 실습비지급내역서 제출
	학생 장학금, 실습기관 지도담당자 지도교수 지도비 지급처리		



5.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자격 및 기타사항

1) 홍익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(서울, 세종) 구분

구분	학기	실습시기	이수구분	인정학점	관련문의
단기 현장실습	하계	6월 마지막주~8월 말	일반선택	6	현장실습 지원센터
	동계	12월 마지막주~2월 말		6	
장기 현장실습	1학기	3월~6월	일반선택	12	
	2학기	9월~12월	전공선택	12	

※ 2023학년도부터는 연계현장실습학기제 가능 (2개월+4개월 또는 4개월+2개월, 총 6개월)

2) 현장실습교과목 신청 대상

-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(단, 계절학기의 경우 휴학생도 참여 가능하나 특별장학금 미지급)
- 주전공, 복수전공, 융합전공생
단, 정규학기 초과학기자 및 졸업유예자(학사학위 취득유예자 혹은 예정자)의 경우 사전 문의 후 신청

3)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

- 1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희망 학생은 현장실습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모집 중인 실습 기관에 지원하고, 최종 선발자에 한하여 '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원'을 작성한 후 해당 학부(과)의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제출. 수강신청원 제출 시 '현장실습참여 협약서'도 추가 제출해야 함.
※ '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원' 및 '현장실습참여 협약서' 미제출자는 현장실습 불가
- 2) 수강 신청이 완료된 학생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완납해야 함.
- 3) 재학 중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18학점까지 가능하며, 계절학기(단기) 현장실습 및 정규학기(장기) 현장실습은 각각 1회씩만 참여 가능(2023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부터 적용) 단, IPP형 일학습병행 참여자는 단기(계절학기 8주 과정) 표준현장실습 1회만 참여 가능
- 4) 정규학기의 경우 이수 한계학점 범위 내에서 사이버 강좌 교과목을 6학점까지 추가 수강 가능.
단, 현장실습 진행 시간에 사이버강좌 수강은 불가하며, 일과 이후 및 공휴일에 수강
- 5) 자율전공(캠퍼스, 단과대학) 학생 참여 불가 : 주전공으로 진입 후 참여가능

4)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

1) 성적평가

- 가. 평가 방식 : P(Pass) / N(Non-pass) 실습 종료 후 성적평가를 통해 확정
- 나. 평가 기준 : 실습 기관 평가 60%, 교수평가 40%로 반영되며, 70점 이상일 경우 Pass 70점 미만일 경우 'F'로 고지되며, 재수강 불가
- 다. 성적처리 완료 전까지 성적표상에는 F로 표기될 수 있으나, 처리 이후에는 P나 F로 표기됨.
- ※ 현장실습 중 중도포기자는 'F' 처리 됨

2) 학점인정

구분	실습 기간	인정학점	이수구분	비고
계절학기	1개월 과정	3	일반선택	—
	2개월 과정	6		
정규학기	4개월 과정	12	일반선택/ 전공선택	전공선택은 최대 9학점까지 인정

※ 학점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

1. 실습기간의 1/5 이상 결근자
2. 실습기관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
3. 고의적으로 현장실습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4.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
5.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한 자

가. 계절학기의 경우 2개월 과정 참여 시, 일반선택으로 6학점 취득 가능

나. 정규학기의 경우 4개월 과정 참여 시, 전공선택/일반선택으로 12학점까지 취득 가능.

단, 이수 구분은 실습 직무와 전공 연관성을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하며, 전공선택은 최대 9학점까지 인정 가능

다. 다전공자의 경우 전공 연관성에 따라 주전공 또는 다전공(복수/융합전공, 바이오헬스융합전공) 중 전공선택으로 인정(다전공(복수/융합 등) 가능. 다전공으로 전공선택을 인정받는 경우, 졸업학점 산출 시 주전공은 일반선택, 다전공은 전공선택으로 인정)

라. 실습 종료 후 배정된 주임교수 및 학부(과)장의 날인을 받아 '학점인정원'과 '활동보고서'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성적처리가 진행됨



3) 장학금 지급

가. 대상자

-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하고 성적경고 대상이 아닌 자
- 당해학기 재입학생 및 편입생은 직전학기 성적기준 미적용
- 등록금 초과하여 장학금 이중수혜가능(단, 계절학기의 경우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도 참여 가능하나,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)

나. 장학금액

- 최소 20일 이상 실습한 학생에 한하여 실제 출근 일수(연차 등 제외)에 따라 실습 종료 후 1일당 20,000원씩 지급.

ex) 19일 근무 시 : 최소 기준일 수(20일) 미충족 : 미지급

20일 근무 시 : $20\text{일} \times 20,000\text{원} = 400,000\text{원}$ 지급

※ 성적처리 종료 후 일괄 지급하며, 특별장학금은 실습 기관에서 지급하는 실습지원비와 별도로 학교에서 학생 우수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임

6. 현장실습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방법



1) 현장실습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방법

- 가. <https://coop.hongik.ac.kr> 주소로 로그인
- 나. 학교 홈페이지 메인창 부속기관 및 realated Links 하단 “현장실습지원센터”클릭
- 다. 클래스넷(교수,학생) “현장실습”메뉴 밑에 현장실습시스템 링크 클릭

2) 학생 지원절차 안내

- 가. 홍익대학교 클래스넷 ID와 PW로 로그인(단 ID는 대문자)
- 나. 해당 전공 학생을 뽑는 실습기관 조회
- 다. 이력서 등록에서 이력서 작성 및 저장->자기소개서 작성 및 저장 후 등록완료
(단,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경우 이력서 작성 시 업로드)
- 라. 이력서, 자기소개서 작성 완료 후 신청관리/현장실습기관 조회/신청을 눌러 지원
(단, 정규학기 신청자의 경우 이력서, 자기소개서 컨설팅 신청 및 실시 후, 지원)
- 마. 기타 :
 - 1) 해당 전공학생을 뽑는 실습기관은 5곳이어도, 실습기관은 1곳만 지원 가능함
 - 2) 지원한 실습기관에 탈락한 경우, 일정이 남아 있는 실습기관에 추가로 지원 가능함
 - 3) 실습기관에서 모집인원이 0명이어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
 - 4) 졸업연계 채용인 경우 4학년 2학기 재학생이나 졸업유예생인지 확인 후 지원해야함

3) 현장실습 추가 제출 서류

: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지사항에 탑재된 양식 참조

7. 홍익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센터 연락처

구분	캠퍼스	센터명	연락처	주소
단기	서울	현장실습지원센터	02-320-3140	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정보통신센터(Q동) 3층 302호
	세종	현장실습지원센터	044-860-2634	(30016)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로 2639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G동 101호 취업진로지원센터
장기	세종	IPP 사업단	044-860-2163	(30016)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로 2639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C406, IPP 사업단